

검사기관의 지정기준(제24조의3제1항 관련)

<p>1. 기술인력</p>	<p>가. 책임연구원급 2명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2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화학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후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7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나. 보조연구원급 2명: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,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</p>
<p>2. 시설 및 장비</p>	<p>가. 시설: 실험실</p> <p>나. 장비</p> <p>1) 일반항목[무게, 온도, 탁도 및 색도(色度)]의 측정에 필요한 장비</p> <p>2) 전처리(前處理)에 필요한 장비</p> <p>3)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영향유기물질의 측정·분석에 필요한 장비</p> <p>4) 금속류 등 유해영향무기물질의 측정·분석에 필요한 장비</p>

※ 비고

1. “이화학분야”란 화학, 화학공학, 환경학, 식품학,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

말한다.

2.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세부 요건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비의 세부 종류 또는 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